

11.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5,227號 1996. 12. 31

주요 골자

- 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편입되는 농림의 전용시에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함(영 제52조의 2).
- 나. 개발제한구역 등 준농어촌지역에서 시행되는 농로 및 농업용수리시설의 보강 또는 개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영 제82조의 2).

개정 이유

기업의 공장용지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여 『경쟁력 10퍼센트 이상 높이기 실천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주민의 부담경감 및 지원을 위하여 농로의 보강 등의 사업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택회보